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

- 주요내용 및 질의응답(의견) 기록 -

▌일시 : 2019년 3월 25일(월) 16:00 ~ 18:00

▌장소 :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

▌주최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예술인소셜유니온

▌주관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사회 : 장지연 /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

▌프로그램

*. 블랙리스트 사태의 현재성 :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사회적 의미와 조사결과

- 이원재 /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전 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원회 제도개선위원장 및 대변인)

*. 블랙리스트 민사소송의 현황 및 계획

- 최현준 / 변호사,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 질의 및 응답

▌문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활동 지원팀 2019blacklaw@gmail.com

※ 본 문건은 전체 워크숍의 진행내용과 질의응답(의견)에 대한 현장기록을 정리한 문건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0190325_[자료집]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을 참고 바랍니다.

● 주요내용[1] : 블랙리스트 사태의 현재성 발제 내용 (이원재 /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1.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 개요 및 주요 결과들

- 활동 전반에 관한 것은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위원회 백서> 참조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http://www.blacklist-free.kr/ 접속 ⇒ 자료실 ⇒
> a. "[발표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5/8)",
> b. "[연구보고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참조

(1) 블랙리스트 진사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활동 개요와 구성(전원위원회, 3개 소위원회)

: 전원위원회 : 위원회 운영 및 활동 관련한 다양한 사안 심의·의결
: 진상조사 소위원회 :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진상조사 자료 수집 등
: 제도개선 소위원회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심의
: 백서발간 소위원회 : 백서 편찬 전반에 대한 구성 방안 논의

(2)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정의

- '블랙리스트'
  : 정부기관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적·사회적 성향이나 활동을 조사·분류하여 이를 관리한 문건 또는 내용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등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범죄이자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위

(3) 블랙리스트 사태의 피해 규모

- 총 9,273개 블랙리스트 명단(단체 342개, 문화예술인 8,931명)
- 블랙리스트 문건에 '배제사유'로 적시되어 있는 시국선언 명단 취합, 분석 결과 규모가 21,362명에 이름
  : <이명박 규탄 시국선언>, <밀양 희망버스 참가자>, <세월호 정부 시행력 폐기 촉구 선언> 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장 기관장 불법적 퇴출 등

(4) 블랙리스트 실행체계

- 대통령과 수석실을 시작으로 "청와대. 국정원, 경찰, 문체부, 문체부에 포함된 전문기관들"이 블랙리스트 관여
- 구체적인 모든 장르에 블랙리스트 실행체계 작동(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는 한 몸처럼 동시에 작동)
- 위원회는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11개월 활동을 통해 밝혀냄

2.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주요 성과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http://www.blacklist-free.kr/ 접속 ⇒ 자료실 ⇒ 각종 토론회 및 종합결과 보고서 참조"

(1)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피해자 관점, 기록자 관점 중심의 활동

- 정부 위원회가 아닌 "현장 문화예술인 / 민간" 중심으로 활동, 조사 진행 :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 사태 전반의 실태와 문제를 밝혀냄

(2) 블랙리스트 사태 전반에 대한 파악, 분석 그리고 의미화
- 위원회 활동 이전, 블랙리스트 사태는 "개별 사건"의 측면에서 다뤄졌을 뿐 블랙리스트 사태 전반에 대한 구조, 흐름, 책임 등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혀진 바 없었음
- 위원회는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의 실체, 구조, 경과, 유형, 방법 등을 밝혀내고 정리하면서 전반에 대한 파악, 분석, 의미화를 진행하는 성과를 낳았음

(3)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와 문화행정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권고, 사회적 공유와 토론

3.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한계 및 과제

(1) 위원회 권한과 기간 한계에 따른 조사의 제약
- 제한된 조사기간, 강제 조사권 부재, 블랙리스트 관련 주요 자료들에 대한 확보의 어려움 등
- 현재성을 강하게 담고 있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꾸준히 조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자체 조성의 어려움

(2) 자유한국당 국회위원들의 견제와 정부의 개혁 의미 미흡에 따른 위원회 활동 위축
-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의 중단•해체 요구 및 예산 삭감•미반영
-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졸속으로 처리, 현 정부에서도 적폐청산의 개혁 의지 미흡

(3)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적 토론 필요
- 사회적 공유와 토론을 진행하고 의혹 제기. 검열에 대한 표현의 자유 운동 진행
- 과거의 낡은 국가주의 정책이 아니라 예술의 가치에 기반 한 예술 (지원)정책 등에 대한 토론회 필요

4. 위원회 이후, 블랙리스트 대응 활동의 주요 경과들

(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위원회 책임규명 권고 졸속 처리 사태
- 문화부의 책임규명 졸속처리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짐
  : 위원회 전 위원들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등의 적극적 문제제기와 현장 운동 재검토, 추가 징계와 사과 등의 성과

(2) 한민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문화부 전 미디어정책관)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고소•고발 사태
-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문화부 관료주의의 단면 확인(현재 진행 중인 블랙리스트 사건)
- 개인의 문제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 후속 조치에 대한 심각한 문제(정부의 미온적 해결)

(3) 충북민예총 민사소송 결과
- 1심 판결, 블랙리스트 명단 등재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1,500만원 배상 선고
- 정부의 항소 결정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문제의식 존재
- 재판 결과에 대한 인식이 "배상액"이 아니라, "배상의 법적 정당성"으로의 전환이 필요
- 국가 권력 차원에서 "대통령 사과", "재발방지로서 문화행정 전반의 개혁과 연계", "보상의 방식으로서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방식 검토" 등을 동시에 요구

5. 향후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관련 활동 계획

(1) 기본방향

- 국가 범죄 피해자들의 사회적 권리회복 필요/국가 범죄의 문제점과 사회적 의미 재확인/블랙리스트 대응 운동의 중장기적 동력 활성화

(2) 주요 활동 계획

-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활동 지원팀 구성 및 운영
- "단체 카톡방 개설"을 통한 일상적 소통 플랫폼 구축
-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원고인단 2차 공개모집 활동 : 2019년 4월 중
-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관련 각종 기획 활동을 통한 사회적 의미 확산과 여론화
  : 민사소송 관련 토론회, 민사소송 관련 (가칭)블랙리스트 피해자 증언대회, 블랙리스트 전시+공연 개최 등

● 주요내용[2] : 블랙리스트 민사소송이 현황 및 계획 (최현준 / 변호사,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1. 사건 경과(2013. 2. 25. ~ 2019. 3. 12.)

- 첨부파일 참고 **<20190325_블랙리스트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 11쪽부터**

2. 소장 및 최근 제출 준비서면 요지

- 피고 : 대한미국,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 피고들은 원고의 소장 및 준비서면에 제출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거나 관련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해달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는 상황(구체적 반박은 없음)

(1) 소장 요지

-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의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 피고들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와 피고의 위법성으로 인해 원고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힘

(2) 준비서면 요지

- 국정원과 청와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사건에 어떻게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는지를 다룸
- 박근혜, 김기춘, 정무수석실, 교문수석실, 문체부, 문체부 산하 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입안, 작성 및 실행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
- 청와대, 문체부가 위법성 있는 행위 뿐만 아니라 문체부 산하의 위원회인 예술위, 영진위, 콘진원 등이 자발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가담한 사실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주장

(3) 블랙리스트 실행체계 및 구조, 주요 문건 **(첨부파일 참고 <20190325_블랙리스트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 15 ~ 16쪽)**

* 대수비 :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 실수비 :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

3.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와 내용

(1) 형사 사건

- 사건 관여자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모두 직권남용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 심리 중

(2) 헌법소원 사건

- 관련 형사사건이 대법원 계류 상태로 선고를 기다리는 중, 진행이 늦어지고 있음

4. 향후 소송 준비 계획

- 피해자별 위자료 청구금액 조정
- 2019년 안으로 원고들의 구체적인 피해, 배제 조치에 대해 개별적으로 밝히려 함

● 주요내용[1]+[2]을 통한 향후 중점 계획(주요 참고사항) ●

1. **민사소송 준비 본격화**, 민사소송 활동 **원고들의 적극적 협조(관심과 참여) 필요**

2. 청구금액 상향에 대해**(원고 개인이 결정)**
   a. **기존 청구금액 100만원** 유지(**인지대 추가 부담 없이 현행 유지**)
   b. 충북 민예총 판례를 참고삼아, **청구금액 1,500만원으로 상향**(그에 따른 **인지대 10만원 추가부담**)
   - 청구금액 1,500만원 상향을 요청/동의한 원고들은, 인지대 10만원 추가 부담 진행
   - 지원팀에 청구금액 상향 건에 대해 요청/동의하지 않은 원고도 **4월 초에 안내하는 입금 안내를 참고**하여 청구금액 상향 가능

3. 원고인 유형
   a. 블랙리스트에 본인 이름을 확인한 적은 없는데, 본인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됐다고 생각하는 경우
   b. 블랙리스트에 본인 이름 확인이 가능한 경우
   c. 블랙리스트에 본인 이름을 확인했고 실제적인 피해도 분명한 경우

4. **원고 개인이 보유/확보한 피해 증거 사례가 있다면 지원팀에게 공유**
   - 문의 : 카카오톡 단체방, 2019blacklaw@gmail.com

5.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원고인단 추가 공개모집 진행 : **4월 중**

6.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 진행

7. 3월 마지막 주 내, **원고인단 카카오톡 단체방 개설**

● 질의응답(공통, 개별) 및 의견

[질의응답(공통) 1] 증거인정 범위, 원고 유지 관련

Q.

-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개인이 제공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증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개인적 여건으로 직접적인 원고 활동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유지하는 것이 괜찮은지?

A.

– 형사판결에 있어서, 증거로 인정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판결에 없는 내용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도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문체부에서 기록을 얼마나 상세하게 보내주느냐가 중요하고요. 예전에, 대통령 산하에 과거사 관련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던 때가 있는데요. 그때 조사한 내용을 법원에서 그대로 증거로 인정할 것이냐가 논점이었어요. 법원에서 정리한 바로는, "법원은 별도로 증거를 조사 할 필요가 있지만, 국가기관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지금 증거가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입증이 된 것으로 보기에, 대부분의 재판에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모두 증거로 채택하고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으니 판결문이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본인이 리스트에 등재가 되었다든지, 별도의 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모두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고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야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에 대한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표현하는 게 배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형사처벌을 특정인 몇 명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태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 조직 국가가 동원 되서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법으로 정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론 안 되고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리스트에 등재된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공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고 선언을 했다는 것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특정 성향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결이 되어야하고 그 방법이 국가배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우리는 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원고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민사소송은 저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셨기 때문에 원고들이 별도로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고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많은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소송 자체에 항상 오셔야하는 건 아니에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사태를 더 이상 용납하기 않겠다는 것을 소송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분들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공통) 2] 사건 정보공유, 초반 원고 모집 인지대 1만원 관련

Q.

- 많은 수의 원고들의 피해 사례를 일괄 수집하거나, 원고들이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어떤지?
- 소송 준비 초반에 원고를 모집할 때, 본인이 인지대 1만원을 지불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 저희가 처음 원고 모집할 때, 본인의 상황과 피해사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었기 때문에 편차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만원 안내신 분들에게 일일이 독려해서 내달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내신 분들도 계시고 편차가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진행을 해야 해요. 저희가 규모도 있고 배상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전에 구글 설문으로 내용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복잡한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분들이 별도로 연락을 드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개개인에 대한 건 지원팀이랑 변호인단하고 같이 확인하면서 진행할 것들 진행했으면 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은 개설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통화를 다 나눠서 동의를 구했고요. 소장이나 좀 더 주요한 문서는 이메일을 통해서 공유하려고해요. 소통은 카톡방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홈페이지를 제작해도, 제작에 공들인 것에 비해 활성화가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요. 일단 말씀드린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의견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액은 얼마라고 딱 얘기할 수 없고 추정을 근거로 진행하는 거고요. 충북 민예총 재판도 아직 1심이고 대법원 가야 최종 배상액이 확정되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 금액(1,500만원)을 적정액으로 놓고 가보자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청구금액을 상향하거나 유지하는 건 원고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행유지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상향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인단 활동을 활성화 하자는 건 배상 문제만이 아니라 블랙리스트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그러한 거고요. 의무적으로 재판에 다 오셔야한다거나 지역에서 모임을 다 참여해야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수사도하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도 했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위법성이 많은 것 같아요.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하려면 강제권이 있어야 하는데 강제권이 없어서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죠. 민사소송을 통해서 원고들이 많이 참여하면 진상규명에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공통) 3] 심증, 진상조사 위원회의 추가조사 계획 관련

Q.

- 진상조사위를 통한 추가조사 계획이 있는지?

- 심증만 있는 상태인데, 물적 증거 수집과 공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A.

– 진상조사위 임기는 끝났고요. 진상조사위를 통한 조사계획은 없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사소송이 중요한 이유도 이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사례가 계속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경험 한 것처럼 워낙 광범위한 사건이고, 조사위 활동은 시간도 제한적이었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문체부만 조사해왔기 때문에 국정원이라든지 더 넓게 조사해야하는 요구들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계획이 있진 않지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나 전 조사위원들은 역사적으로도 추가조사를 해야 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을 민주당이라든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기,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사소송을 한 축으로 공동행동을 통해 추가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충분한 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심증만 있는 경우에 물적인 증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증거가 없는데 만들어낼 수는 없어서 개별 원고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해주시면 진상조사위가 밝혀낸 부분에서든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입증하기 곤란한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원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하는 부분은, 가지고 계신 자료나 증거를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이 제한적이었고 일부분이었다고 한다면 향후에 다른 진상조사나 진실규명에 대한 노력을 통해 밝혀진 자료도 증거 제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3년 전만 봐도 현재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었어요. 조사위 처음 만들 때도, 문체부가 상근자 3명인가 4명을 둔, 3개월짜리 조사위를 만들자고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는데, 그것도 현장의 많은 예술인들이 문제제기해서 11개월 연장하기도 했죠. 형사 고발 할 때도,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단지 많은 정황과 진술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법률가들이 밝혀낸 거잖아요. 민사소송 과정에서 더 많은 현장 문화예술인들이나 피해자가 등장할 것이라 생각하고 한 명 한 명에게는 단편적 정보지만 이게 더 모이면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진상조사위에서 밝혀낸 내용들도 많은 현장 예술인들의 소중한 진술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물적 증거가 되긴 어렵겠지만 서로 모아내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공통) 4] 배상 주체들의 범위

Q.

- 법률 소송 관련해서 직접 당사자를 중심으로 봤는데, 예를 들어 3년 전부터 블랙리스트 사태가 국가범죄의 위법성으로 법원에서 판결 받기까지 이 상황을 끌고 온 수많은 활동가, 시민들이 있는데, 이들도 국가로부터 배상 받을 수는 있는지?

A.

- 광장에서 활동하시면서 전업을 폐업하신 활동가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수억 원을 청구하고 블랙리스트 직접 관여자가 구속된다고 해도 그 분들이 받은 고통을 보상받기에는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의 법정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관련해서 어떤 손해가 얼마큼 있었는지를 주요하게 봐요.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처음부터 청구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했다기보다 밝혀지는 바에 따라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참작하여 국가에 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액수를 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소송하려면 원고가 지어야하는 부담이 많아요. 가액이 높아지면 법원에 내야하는 세금이 많아져요. 혹시라도 일부는 이기고 일부는 지게 될 경우에도 패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사례로 남은 위자료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볼 때, 집단소송이 많았던 분야가, 말씀드린 과거사 사건에서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나라 군인에 의해 학살당했던 보도연맹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처음에 법원마다 달랐어요. 너무 많고 금액이 다양하니 대법원에서 일괄 정리를 했어요. 관련해서 저희 블랙리스트 사건도 충북 민예총 1심 판결 난 청주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은 배상액을 서로 협의할 거라고 봐요. 무한정 했으면 좋겠는데 원고들의 부담이 커지게 돼서 여러 고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훨씬 현재적이고 증거도 많고 당장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진행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액이 더 많을 수 있겠다는 예측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국민 소송이 되어야한다고는 항상 생각합니다. 민중 소송이 되어야 국가로부터 뭘 할 수 있을 텐데요. 블랙리스트 사태는 너무 위헌적인 행위여 이를 테면, 100가지 청구 원인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 꼭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인가는 분명하게 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건과 관련해서 결국에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그러면 배상받을 여지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공통) 5] 배상액, 인지대 결정 권한 관련(원고인의 결정 중요)

Q.

- 변호사 비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인지?
- 배상금을 기금에 활용한다는 내용을 방송에서 봤는데 실제로 어떠한지?
- 실제로 피해 받은 경험을 비춰볼 때, 기존 청구금액 10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상향이 가능한지?

A.

– 변호사비용은 없습니다. 배상액은 더 높일 수 있는데, 그만큼 또 부담도 커져서요.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 법률적인 문제, 구체적인 피해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배상액을 더 협의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비율에 따라 인지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블랙리스트 명단에 등재된 정도인 분들은 1,500만 원 정도 상향조정하면 어떠한지 제안 드린 겁니다. 인지대 부분은 원고들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 쓰입니다. 그 비용이 특정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자료에 이름도 없고 입증하기 어려운 분들은, 배상액을 높이셔도 상관은 없지만, 배상을 받으실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현행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상액을 기금에 낸다거나 하는 결정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과 원고 관련해서는, 원고들 개인이 결정 하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의 견]

- 문체부에 한정해서 블랙리스트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당한 경험으로는 모든 권력기관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 같다. 권력과 정보가 강화되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육해공군 통수권자로 모든 것을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공포스러움을 자아낸다. 문체부만 작동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하면 내가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정부입장에서는 손바닥 들여다보듯 사찰과 감시를 하는데 도저히 일을 못하게 만든다. 한낱 개인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공포스러운 상황이다. 명백하게 민주주의 질서를 위해 이번 블랙리스트 사태를 꼭 해결해야 한다.

- 총론적 취지에 동의합니다. 15년도에 아르코 지원에 실제로 배제가 되었는데요. 재판은 증거를 통해 말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증거를 대려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열람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이 정보를 청구하기 어려우니 국정감사든 국회의원을 통해서든 이 사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배상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 같은 극단이나 개인으로 보면, 극단을 만들려고 30여년을 몸담아 왔는데, 결과적으로 블랙리스트 한 10년으로 남는 결과는 극단 해체에요.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피해가 있는데요. 100만원에서 1,500만원 올린다는 말을 하셨는데, 증거가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에 따라 액수가 변동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자신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꼭 돈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 선명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으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블랙리스트가 성공한 것 같아요. 집이 허물어져 버렸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모이기도 어렵고 일으키기 힘든 상황으로 와버렸으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함께할 생각이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2년 전까지 이 근처 파출소 옆 골목에 살았어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 했었어요. 나중에 블랙리스트에 제 이름이 올랐다는 걸 알았어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블랙리스트가 수면위에 떠오르면서 이명박 정부 때 근무했던 파출소장이, 물대포로 사회적 논란이 있었을 때, 청주로 갔다가 박근혜 정부 때 다시 파출소로 왔더라고요. 저는 구체적인 피해는 없다고는 생각했지만, 리스트에 오른 것 때문에 만원을 지원하고 이 일이 밝혀지길 바랐는데 오늘 워크숍을 와서 들어보니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가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출소장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어디 가는지를 물어보며 쓸데없는 곳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블랙리스트 명단을 보고 내가 감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명박 정부 때 많은 현장에서 그 사람을 봤어요. 오늘 이 자리 와서 보니 당시에 내가 사찰을 받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고 불쾌할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은 물질적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의 견]

- 아르코 창작기금을 신청했는데, 발표 날짜보다 훨씬 늦게 발표가 났어요. 개인적으로 집 문제가 있어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문화예술위원회에 전화해서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를 물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세 차례 전화해도 이렇다 할 대답은 못 들었어요. 내몰리듯 집을 이사하게 되면서 몸 상태도 좋지 않게 됐는데요. 7월 25일인가 전화를 받았어요. 제 작품이 최종에서 탈락 됐다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당시에 100만원 배상 받을 수 있고 만원을 내면, 애써주시는 분들께서 소송을 진행 해주신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100만원 금액도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촛불집회 가서 발에 동상 걸리도록 함께하고 시대도 바뀌었는데 나는 여전히 가난해야 하고 달라진 게 없다는 것에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배상금도 어디에 기금으로 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만원만 날리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지원팀에서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딘가에서 계속 힘써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응답(개별)]

Q.

- 우리만화연대는 블랙리스트 관련 국정원과 수석비서관회의든 우만연이라는 이름으로 거론됐었고 지원이 배제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까. 문체부에 대한 감사 자료를 감사원에서 거부 했고 국정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 배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증거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 배제 한 기관에서도, 저희들이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배제됐다고 본인들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죠. 분명히 블랙으로 배제 되지 않았다고 변론할 텐데, 증거 부분과 관련해서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금전과 관련된 자료는 드릴 수 있겠지만,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배제됐다는 자료는 사실상 개인이 제출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부 기관이 문체부에 경과 보고한 자료를 취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지요.

A.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서 보고서 같은 걸 받은 게 있는데, 보니까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 읽어봤는데, 그 자료만으로도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화연대 자체가 블랙리스트 피해를 받은 것 같아요. 단체 자체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소속된 만화가 중에서도 구체적인 피해 사례 증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명시된 사건들, 언론이나 조사위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원고들과 변호인단하고 추가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